

■ 정책동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 '지식·정보' 체제로 확대 개편

정부가 특정업종에 직접 개입, 기술개발·생산성향상 등을 지원하던 산업합리화제도가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86년 이후 공업발전법에 의해 제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산업정책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기금이나 산업기술개발자금 등 정부의 산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과거의 제조업에서 유통·물류·연구개발·광고·컨설팅 등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의 국제산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 기업·대학·전문연구기관 등이 산업협력협의회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분야 협력사업,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등 일정한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실기업을 사들여 가치를 높여 되파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납입자본금 30억원 이

상으로 등록여건이 최소화되며 사채발행한도 특례(회사채의 10배), 지주회사 특례(부채비율 및 자회사 지분률제한 제외) 등이 적용되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도 받게 된다.

이밖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산업정책 차원에서 조정,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산업정책의 종합적인 심의기구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이번 산업발전법은 지식산업화로의 이행에 따라 제조업 이외에 유통·물류·연구개발 등 제조업 지원서비스분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전비전을 5년 단위로 탄력 운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특히 공업발전법에서는 합리화 대상업종에 대해 생산성향상, 연구개발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시책을 폈던 반면 산업발전법에서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 도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산업자원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강화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40억원을 확보, 추계 컴덱스,



홍콩섬유직물박람회 등 740여개 중소기업의 47개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지원예산은 貿公을 포함해 당초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며 총 2,200개 업체가 117개 전시회에 참여하게 된다.

산자부는 추경예산 40억원을 활용해 미국 라스베이가스 추계 컴덱스, 홍콩섬유직물박람회 등 47개 전시회에 참가하는 641개 업체에 대해 1.5부스 한도내에서 부스임차료 전액을 지원하고 무공·업종단체에서 바이어유치, 홍보, 전시품통관, 상담 등의 행정지원도 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벤처기업 등 한국관 구성이 곤란한 업체 100개사를 선정해 업체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임차

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벤처기업 및 첨단제품 관련 전시회 참가업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대상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업체들의 수가 경쟁국의 1/10~1/30 수준에 불과한데다 전시회를 통한 수출확대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올해 전시회를 통한 수출계약이 당초의 4억3,400만 달러에서 6억6,4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자원부, 국산화 핵심자본재 선정

산업자원부는 국산화 개발이 완료, 생산·수출 등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자본재 565개 품목을 1차 고시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수립한 '핵심자본재 국산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기계분야 391개, 전자·전기류 157개, 소재류 17개 품목을 사업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선정은 시장진출 전망과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품목은 정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저리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이들 품목에 대해 산기반자금

으로 440억원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2003년까지 총 4,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7.5%,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동일인당 한도 20억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40% 이내) 등이다. 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로 관리하는 소재·부품 생산자금을 우대금리, 1년만기 상환(3년 연장 가능), 1회전 소요운전자금 등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품목은 자체개발이나 산업기반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완료돼 사업화가 가능한 것으로 향후 분기마다 고시된다.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7,218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99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정부와 16개 시·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공동조성하여 시·도별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99년도 지원규모는 총 7,218억원(정부지원액 3,962억원, 지자체 확보액 3,256억원)으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금년지원액의 83%인 6,000억을 상반기중에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정부지원액 3,310억원을 시·도에 배정함으로써 시·도에 따라 빠르면 4월부터 상반기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8억원한도내에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한도내에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되며, 융자금리는 7.5% 이내에서 시·도별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무역업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구조조정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여온 구조조정자금을 수출업체, 무역업체, 재해업체, 지역특화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단 명부」 발간

중소기업청은 경영기술지원단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고급전문가를 직접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단 명부」를 발간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영과정의 애로사항을 자문하고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축적한 고급인력들로 구성된 경영기술지원단을 '96. 8월부터 본청 및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영기술지원단은 현재 532명이 활동중 있으며, 전문분야별로는 경영분야 69명, 금융 74명, 세

무·회계 47명, 인력·노무 40명, 환경 16명, 창업 25명, 특허·법률 9명, 무역·판로 60명 및 기술·품질분야가 19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사, 품질관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도 257명이나 된다.

동책자는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직접 선택하기 쉽도록 대전·충남경영기술지원단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및 경남 그리고 제주 경영기술지원단 순으로 각 지방경영기술지원단별, 전문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또한, 동 책자에는

개인별로 전문분야, 성명, 나이, 학력, 주요경력, 상담(지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 및 소지한 자격증까지 상세하게 수록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동 책자를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각 지회, 중소기업진흥

공단 각 지역본부 및 각 지역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중소기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99개 업체 추가선정 지원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99개 업체에 대해 기술혁신개발자금 50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1999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으로 지난 3월 745개 업체에 400억원을 출연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추경예산의 지원업체 99업체를 선정하여 50억원을 출연(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중복지원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5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정부출연금의 50%)을 지급하며, 하반기에 실시하는 중간점검 결과 기술개발 진행 상태가 우수한 업체는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신청업체 급

증으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많은 업체가 탈락함에 이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50억원)을 확보·지원하는 것이다.

기술혁신개발자금은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기술개발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출연하는 자금으로써, 융자와 달리 담보가 필요 없으며, 개발성 공시에 출연금의 30%만을 기술료로 징수(1년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중소기업이 개발의 주체가 됨으로써 현장 필요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성과가 중소기업에 귀속되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력이 축적되기 때문에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